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88
----------	-----

2025. 10. 15.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14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15.)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동호 의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음. 서울시 또한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전용집하장 설치, 자치구별 통계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강남구는 현수막 게시 규제로 그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강남구청 및 산하기관의 정책 홍보 현수막, 정당 현수막 등의 공공 현수막과 일부 민간 현수막은 여전히 제작되고 있음. 이후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청에서 제작·게시하는 공공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적용하고, 관내 시설과 민간에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친환경

경 현수막 사용 확산을 유도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등에 관한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의 단계적 추진(안 제5조)
- 다.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안 제6조)
- 라.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관련 예산 지원(안 제7조)
- 마.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탄소중립 · 녹색성장 실천

- 행정안전부는 매년 인쇄되어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약 6천여 톤임을 확인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은 재활용을 활성화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게 재활용 정책에 동참할 것을 권장하였음.
- 이에 따라 몇몇 지자체들은 지역 기업들과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나섰음. 그 중에서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100%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

용을 의무화했음.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를 발간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옥외광고사업자와 광고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만들고, 디자인 지침서에 △현수막 소재 인증, △인쇄 색상 수 최소화, △잉크 사용량 최소화 등을 제시함.

나. 검토 내용

○ 제정 목적

- 안 제1조는 이 조례가 권장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목적 규정임.

○ 용어 정의

-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친환경 소재’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말하는 녹색제품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됨.

○ 구청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 실행 계획 수립과 시행, 친환경 소재에 대한 조사, 친환경 현수막 사용 사업에 대한 지원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타당하다고 보임.

○ 사업자의 책무

- 안 제4조는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정하여, 수동적인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협업하고 동행할 파트너 지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 안 제5조는 우선적으로 공공목적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목적으

로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임. 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 시 우선 게시를 권고하기 위해 운영할 구체적인 가점제도가 있다면 부서에서 소개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교육 및 홍보

- 안 제6조는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한다면 지역사회에 이 사업을 널리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재정 지원

- 안 제7조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제되는 사업 주제가 ‘친환경 현수막’ 이므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건
<p>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u>교육 및 홍보 사업</u> 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7조(재정 지원) _____</p> <p>-----</p> <p>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u>친환경 소재 현수막 교육 및 홍보 사업</u> 4. (원안과 같음)

○ 협력체계 구축

- 안 제8조는 이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유해물질 배출 저감 및 폐기물 감소 효과

- 강남구는 현수막 제작 및 활용이 활발하고 인쇄 건수가 많은 편인데, 그만큼 폐기물 발생량도 많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환경친화적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면 유해물질 배출이 줄고, 소각하지 않아도 되어서 대기오염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소재 자체가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 폐기물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도 늘어나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동행할만한 사업체를 찾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6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4호]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참고 자료

[붙임 1] 파주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선도 사례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5. 10. 15.)

- 질 의 :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 규격이나 다지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
- 답 변 : 현재 특정 규격이나 규제사항은 없음. 질의와 제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당장 규제 기준을 정하기 보다 교육, 홍보, 계도를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현수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질 의 : 장기적으로는 일회성인 기존의 현수막 게재는 지양하고 미디어파사드나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을 활용, 온라인 홍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수막 금지 구역 같은 시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 변 : 전자게시대와 현수막 금지 구역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기존에 시도도 있었음. 지속적인 검토와 적극 추진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7. 토론 요지

- 입법 취지에 맞추어 규정 내용이 명확하도록 조문에 수식어를 추가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